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49

발의연월일: 2024. 7. 25.

발 의 자:임미애·김 윤·염태영

오세희 • 윤종오 • 박희승

김정호 • 이연희 • 임오경

이광희 • 전진숙 • 복기왕

김문수 · 김용민 · 윤후덕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정당법」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·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6항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2250호) 및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 25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때에는 해당 후원금이 지구당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중앙당후원회는 해당 후원금을 지구당에 기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8조제2항제3호 중 "중앙당(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) 및 시·도당"을 "중앙당(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), 시·도당 및 지구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구당"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및 지구당"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, 지구당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후원인의 기부한도 등) ①	제11조(후원인의 기부한도 등) ①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
	후원금을 기부할 때에는 해당
	후원금이 지구당에서 사용될
	수 있도록 지정하여 기부할 수
	있다. 이 경우 중앙당후원회는
	해당 후원금을 지구당에 기부
	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
	<u>한다.</u>
<u>⑥</u> (생 략)	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
제38조(정당의 회계처리) ① (생	제38조(정당의 회계처리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당헌ㆍ당규에는 다	2
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	
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중앙당(정책연구소를 포함한	3. 중앙당(정책연구소를 포함한
<u>다) 및 시·도당</u> 이 물품·용	<u>다), 시·도당 및 지구당</u>
역을 구입・계약하고자 하는	
때의 구입ㆍ지급품의서에 관	
한 사항	
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	③
(<u>시·도당</u> 의 경우에는 그 대표	<u>시·도당 및 지구당</u>

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·검사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④ (생 략)
- 제40조(회계보고)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(이하 "회계보고"라한다)를 하여야 한다.
 - 1. 정당의 회계책임자

1월 31일)까지

- 가.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 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(<u>시·도당</u>의 경우에는
- 나.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(정당선거사 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)부터 선거일 후 20일(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

<u>.</u>
· 1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
제40조(회계보고) ①
1
가
) EE D -17-1
<u>시·도당 및 지구당</u> -
나

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 쇄일을 말한다) 현재로 당 해 선거일 후 30일(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40일)까 지, 선거일 후 21일부터 12 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(시·도당은 1월 31일)까지

다.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 시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 거 등에 참여한 연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 목에 의하고, 당해 <u>시·도</u> <u>당</u>과 정당선거사무소는 나 목에 의한다.

2. ~ 5. (생략) ② ~ ⑥ (생략)

<u>시·도당</u>
<u>및 지구당</u>
다
시·도당 <u>,</u>
<u> 지구당</u>
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